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102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나10225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10111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 선고 2021. 11. 12.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1011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53,76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효선

판사박상준

판사신지은

별지